

俞吉濬의 君主論 研究

—『西遊見聞』과 『政治學』을 중심으로—

李 朝 漢

제1장 序論

제3장 君主論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2장 君主論에 관한

제4장 結論：君主論의

예비적 고찰

실천적 의미

제1장 序論

정치에 실제로 참여했던 정치가의 사상을 통해 한 시대의 정치사상을 고찰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이 논문은 개화기의 선각자들 중의 한 사람인 俞吉濬¹⁾의 思想과 政治的 活動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는 儒學者의 집안에 태어나 18세까지 전통적인 性理學을 배웠다. 그 후 開化勢力 形成의 産室이었다고 볼 수 있는 朴珪壽의 사랑에서²⁾ 해외사정에 관한 서적 등 새로운 학문, 새로운 세계와 접하게 되면서 기존의 科擧制度를 통한 정치 참여를 거부하게 되었다. 그는 당시의 한국인으로서는 드물게 開化의 모델로 여기던 日本과 美國등의 서구에서 직접 교육을 받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누

1) 號는 矩堂, 1856년(철종7년) - 1914년.

2) 이광수전집 17, p.401

혁명사상의 유래에 대한 이광수의 질문에 박영효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 신사상은 내 일가 박규수의 집 사랑에서 나왔소.”

서재필박사전기에서는 서재필이 박규수의 사랑에서 새로운 사상을 보고 들었으며 김옥균등의 개화파를 만났음을 기술하고 있다.

렸다. 따라서, 그의 개화논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구체성을 띠고 있다. 그는 또한 당시의 군주였던 高宗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서 정치에 참여했던 政治家였다. 따라서 그의 개혁논의는 현실성이 강하다. 그는 또한 현대적인 용어와 체제로 『西遊見聞』과 『政治學』이라는 체계적인 著作을 남김으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그의 사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무엇보다도, 兪吉瀾의 중요성은 그의 君主에 관한 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開化期라는 정치체제 개편기에 처하여 가장 예민했던 문제는 그 당시까지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정치의 중심이었던 君主에 관한 문제였다. 정치체제 개편, 혹은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는 권력의 중심이었던 君主³⁾에 대한 논의로 집약될 수 있다.

앞서 말한 두 저서 즉 『西遊見聞』과 『政治學』에서 그는 人民의 權利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立憲君主制 -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君民共治 - 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정치체제의 개혁과 군주제의 유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함께 추진하는 '타협'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兪吉瀾의 민주주의 수용은 急進的인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점이 性理學이라는 전통위에 西歐의 思想을 수용한 開化期 知識人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兪吉瀾은 기본적으로 政治家였고 또 政治思想家였음에도 불구하고 政治學分野에서의 兪吉瀾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형편에 머물고 있다. 아직 韓國政治學界에는 解放以前 시대에 대한 괄목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김영작교수가 韓未내서널리즘의 한 부분으로서 兪吉瀾의 사상을 분석하고 있는 이외에는 兪吉瀾의 저서를 번역하는

3) 君主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우선 정치개혁은 기존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어서 지배자 혹은 지배계층에도 변동이 오게 된다는 당위적인 해답으로 설명 가능하다. 또한 실제로 개화기에 개화파라 이르는 사람들도 군주를 중심에 두고 그들의 주장을 떠나가고 있다. 박영효는 갑신정변의 방법에 관하여 "...상감을 꼭 붙드는 것이지요."라고 회상한 바 있고 (이광수전집 17, '박영효씨를 만난 이야기,' p.402), 서재필 "국왕을 지지하고 적절할 시기에 가서 국민들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해주도록 그를 설득해 보기로 결심했다."라고 한 바 있다. (서재필박사전기, p.13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은 開化期라는 상황 속에서 兪吉濬이 기존의 체제를 바탕으로 新體制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그의 저작에 나타난 君主論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兪吉濬의 여러 저작 중 『西遊見聞』과 『政治學』에 나타난 그의 君主論을 가능한한 兪吉濬의 입장에서 재정리하려 한다. 두 저서는 모두 서양의 思想과 體制를 소개하는 책이나, 兪吉濬은 이를 통해 朝鮮改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제2장 君主論에 관한 예비적 고찰

兪吉濬의 君主論은 그의 개혁론이라는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예비적 고찰에서는 본 논문이 근거하고 있는 두 저서 『西遊見聞』과 『政治學』의 서술배경 및 군주론의 배경이 되는 사회개혁에 관한 兪吉濬의 견해를 정리할 것이다.

제1절 : 『西遊見聞』과 『政治學』의 서술 배경

『西遊見聞』은 저술과 출판 시기가 분명한 반면, 『政治學』은 그 저술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政治學』은 단행본으로 출판된 일이 없다.) 兪吉濬 스스로가 『西遊見聞』 序에서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西遊見聞』은 1882년 日本 유학시 구상하여, 1887년 閔泳翊이 제공한 翠雲亭으로 유폐장소를 옮긴 후 저술에 착수하여 1889년에 완성하였고, 1895년 동경에서 간행되었다. 일본의 발전이 西歐를 모방한 것임을 깨닫고 서구의 풍습, 제도등을 설명한 책이다. 兪吉濬이 『西遊見聞』(나아가서 보다 전문적인 『政治學』)을 남긴 목적은 序에 잘 압축되어 있다.

…余가 東으로 日本에 遊하여…事物의 繁殖한 景像을 見함에 …新見奇文의 書를 閱하여 反覆審究하는 間에 其事를 考하여 …其 措施規程이 泰西의 風을 模倣한 者가 十의 八九를 是居하니 …紅毛碧眼의 才藝見識이 人에 過한 者가 必有함이오 余의 舊日 量度한 바 같이 純然한 種에 不止함이라 余의 此遊에 日記의 無함이 不可하다 … 米國 留學 時 各種의 制度에 감탄 … 留學 시켜준 閔泳翊 등이 留學보낸 理由가 있을터인즉 … 들은 바를 기록하고 본 바를 묘사, 古今의 書籍에서 선택하여 구성하는 책을 構想(하였다.)¹⁾

따라서, 제목은 『西遊見聞』이지만 이 책은 단순한 旅行記나 見聞記이상의 의미가 있는 서양의 사회와 정치를 연구한 체계인 저작이다. 이 책에서 兪吉濬이 사용하는 개념, 용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²⁾

그가 『西遊見聞』을 쓴 시기는 유폐되어있던 시기로 甲申政變 후 開化派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그는 金玉均 등 甲申政變 주도세력과 친한 사이였으나, 감신정변 당시 미국에 있었고, 감신정변 자체의 방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으며, 閔泳翊 등 당시의 지배세력의 지지와 호의를 얻을 수 있어서 사형되거나 지방으로 귀양가지 않고 서울에 연금된 상태로 있었다.³⁾ 그러나, 그는 당시 정치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가 革命家이기 보다는 현실적인 政治人이었고 그의 목표가 民主主義革命이기 보다는 朝鮮의 富國強兵이었다는 점은 이 당시 그의 생활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는 연금상태에 있으면서도 국가의 사무 중 특히 外交分野의 문제에 관여하여, 淸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작성해주기도 했고 외국인들과의 利權契約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 당시라면 백성에게 널리 위험기를 바라고, 그들이 자각하기를 바란다는 자체가 徐載弼의 회고록에

1) 『西遊見聞』, 全書1, pp.3-6.

2) 國家, 政府, 主權, 人民 등.

3) 유동준, 兪吉濬傳, pp.130-144.

나온대로 '反君主의'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른다.⁴⁾ 그는 서구의 民主主義를 긍정적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專制君主政을 옹호하거나 性理學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고, 책을 國漢文混用體로 서술한 것으로 보아 그의 序文에 나타난대로 백성들 사이에 널리 읽히는 책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결코 反君主의이었던 것은 아니며 또 그가 反君主的이라고 당시의 지배층이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사실은 그가 1894년 다시 관직에 등용되어 甲午改革을 주도했고 그의 책을 일본에서 간행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政治學』은 보다 전문적인 정치학개론서이다. 이 책은 總論을 다루고 그에 해당하는 各論을 다루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政治學』은 俞吉濬 생존시에 출판되지 못하고 手記의 형태로 남아 있다.

이 책은 체제상 완성되지 못한 글, 혹은 일부가 유실된 글이라고 여겨진다. 그 까닭은 그가 제1편과 제2편의 제1장까지는 고대부터 근세까지의 모든 기간을 다루고 있고 근대 각국의 예를 들고 있는데, 제2편 2장은 제5절 國家의 理想에서 고대 그리스-로마에 대한 언급으로 종결된다. 그리고, 그가 1896-1907년에 이르는 일본망명에서 돌아온 후 활발한 사회활동과 더불어 저술, 출판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출판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俞吉濬을 연구한 기존의 학자들이 이 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책은 완성되지 못한 초고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책의 완성된 부분에 한해서는 상당히 공들여 치밀하게 서술한 책이어서 적어도 國家의 制度에 관한 俞吉濬의 견해를 추적하는데는 훌륭한 가치가 있다.

『政治學』이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896년에서

4) 韓國의 近代思想, "서재필," p.245 (원문은 F. A. Mackenzie, The Tragedy of Korea : Koreans Fight for freedom) 1896년 초... 모국에 돌아왔다... 황제 폐하께서나 조정의 조신들은 나의 충고를 용납하였으나... 그들은 황제 폐하께 간언하기를 내가 황제 폐하의 편이 아니라 대한제국 '국민'의 편이라고 고해 바쳤던 것이다. 그 때만 해도 황제 폐하가 아닌 일반 국민을 편든다는 것은 곧 반역행위나 다름없는 것처럼 인식되던 시대였다.

1907년에 이르는 망명기에 일본에서 쓰여졌다고 짐작 된다.⁵⁾ 이 책은 『西遊見聞』보다 더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보다 專門의 인 성격의 政治學書籍이기 때문에 『西遊見聞』이 쓰여진 1885년-1892년의 幽閉기간에 접하지 못했던 참고 서적을 더 접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쓰여졌다고 여겨진다. 『西遊見聞』이 쓰여질 당시 兪吉濬은 참고 서적이 부족함을 안타까와 했었지만, 그가 다시 관직 생활에 복귀한 1894년까지 그의 행동 범위는 크게 제약받았고 1894년부터 俄館播遷으로 망명길에 오른 1896년 2월까지 甲午改革의 중심 인물로서 政治活動에 너무 바빠서 저술에 손을 댈 형편이 못되었다. 그러나, 일본망명 시기에는 그가 원하던 참고 서적들을 국내에서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저술을 위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었다.⁶⁾ 망명중에도 그는 朝鮮의 개혁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귀국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종의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⁷⁾

『政治學』에는 兪吉濬의 정치체제에 대한 의견이 잘 나타나 있지만 朝鮮의 상황과 西歐 혹은 日本의 상황을 비교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그는 한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체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5) 이광린, 한국개화사상연구, “유길준의 개화사상”, p.62.

유동준, 유길준전, pp.226-227.

6) 유동준, 兪吉濬傳, p.227.

7) 유동준, 유길준전 및 유길준전서4, “정치개혁론”에 의하면 兪吉濬은 1901년에서 1902년 사이에 일본에서 사관학교를 졸업했으나 한국 정부가 형식적으로 한국군 장교로 임명했을 뿐 귀국을 허락하지 않아 동경에 머물고 있던 士官들을 규합하여 정치개혁을 도모했다. 그는 인천에 사는 어떤 인물과의 서신 교환을 통해 국내에서도 동지를 구하여 일본에 있는 동지들과 더불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거사를 일으키려고 준비했으나 준비과정에서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유길준과 한국 정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兪吉濬은 일본 내의 孤島로 유배되었다.

이 당시 작성된 保國之策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全書4, p.260)

1. 朝鮮의 운명은 日本과 러시아에 달려있다.
2.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의 문제로 전쟁을 시작한다면 조선은 망한다.
3. ...전쟁에 이르지 않도록 일본과 러시아로 하여금 相見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4. 이와같이 하기 위해서 조선이 먼저 개혁해야 한다.
..... 중략
9. 현재의 조선 정부 인사들은 이러한 큰일을 담당할 수 없으니 마땅히 척결하고 퇴진시켜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朝鮮에 적절하다고 여긴 체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추출해 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저작이 미친 영향이다. 『西遊見聞』이 출판되었을 무렵 俞吉濬은 官職의 핵심에 있었으므로 그의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政治學』이 서술된 무렵, 그리고 그 이후에 俞吉濬은 官職에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는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교육 및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바, 그의 사상은 非政治的인 통로를 통해 전파되었다.

『政治學』이 서술되었다고 보는 시기는 韓國과 日本의 관계가 매우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시기인데, 俞吉濬은 최소한 『政治學』에서는 日本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親日 혹은 反日의 문제는 본 논문에서 함께 논의하기에 너무 벅찬 주제이므로 그가 참여 했던 甲午改革이 親日的인 요소가 많았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제2절 : 自然과 人間

俞吉濬의 두 저서 『西遊見聞』과 『政治學』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간단히 개관해 보면 『西遊見聞』은 주로 西歐의 전반적인 모습을, 『政治學』은 西歐의 정치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구성상의 공통점을 自然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自然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독립적인 社會(人間文明), 그리고 社會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역시 독립적인 國家에 대한 논의의 순서로 전개되어 간다는 점이다. 自然과 人間文明, 社會와 國家를 구분했다는 것은 人間の 制度를 自然(道)의 일부로 보아온 전통사상과는⁸⁾ 다른, 俞吉濬의 政治思想이 지니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政治學』은 그 순서 자체가 ①國家의 自然的 要素 → ②國家의 社會的 要素 → ③國家의 法

8) 김길환, 朝鮮儒學思想研究, pp.301-351.

理로 되어 있다. 『西遊見聞』은 ①自然에 대한 설명 → ②政治制度 및 國家에 대한 설명 → ③社會 전반에 걸친 서술의 순서로 되어 있다. 俞吉濬의 궁극적인 관심은 國家와 政治였지만 그는 그것이 自然과 社會를 배경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비적 고찰로서 『西遊見聞』에 나타난 自然과 人間文明, 社會와 國家에 관한 俞吉濬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俞吉濬은 자연 환경이 인간의 문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西遊見聞』의 총20편 중 첫머리의 2편은 地球에 대한 자연과학적 소개와⁹⁾ 세계에 대한 지리적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에 대한 과학적 기술에 이어 세계를 6대주로 나누고 그 이름을 漢文과 영문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각 대륙에 속해 있는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다.¹⁰⁾ 각 대륙의 高山들의 이름과 높이 풍광 등을 설명하고(유럽은 각 나라별로 소개하고 있다)¹¹⁾, 바다를 북극해, 남극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으로 나누어 각각의 깊이와 영역을 소개했을 뿐 아니라 ‘마치 별판을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海流를 설명하고 해류는 인간 생활과 유익한 관계가 있어서 당시 영국의 富強에 도움을 준 바가 크다고 하였다.¹²⁾ 이어서 세계의 潮水와 江을 각 대륙별로 나누어 한문 및 영문발음의 이름과 깊이, 넓이, 길이 등을 함께 기술하고 교통의 편리 등 인간생활에의 효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¹³⁾ 이어서 俞吉濬은 세계의 人種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종을 황색인, 백색인, 흑색인, 회색인, 적색인의 5종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그는 스스로 이를 블루먼氏의 분류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각각의 인종의 특색과 분포 지역, 인구 수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자연적 분류 외에 각 인종이 또 민족으로 나뉘어 국가를 세우고 부락을 성립시키니 언

9) 『西遊見聞』, 全書1, pp.21-30.

10) 『西遊見聞』, 全書1, pp.33-35.

11) 『西遊見聞』, 全書1, pp.41-60.

12) 『西遊見聞』, 全書1, pp.61-77.

13) 『西遊見聞』, 全書1, pp.78-80.

어가 2750종으로 나뉘고 종교 문물도 매우 다를 뿐 아니라 기후·환경에 따라 같은 인종도 그 외모나 특색이 달라지며 인종간에 혼혈로 인한 새 종족이 생겨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¹⁴⁾

『政治學』에서의 自然과 人間文明에 대한 논의는 좀더 구체적이다. 『政治學』에서는 막연한 자연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國家라는 人間文明과의 구체적 관계 속에 놓여 있는 氣候, 地形, 地質 등의 自然的要素를 설명하고 있다.

인류는 다양한 기후에서 모두 생활할 수 있지만, 氣候는 인류의 생활, 國家의 性質 및 制度에 영향을 준다. 즉, 기온이 너무 추우면 인간이 생리적으로 완전히 발달하지 못하여 미묘한 정치제도를 운영할 수 없고, 또 생활이 매우 어려워져 생존에 급급한 지경이 되면 지식을 연마하거나 정치를 考究할 시간이 없으므로, 孤高한 文明 발달과 복잡한 정치적 생활은 오직 온대 기후의 인류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서 유럽 각국 수도의 평균기온을 제시하고 있다.¹⁵⁾

地形的 문제에 있어서는 山野의 다소, 水利의 분포, 海岸線의 장단이 영향을 준다고 본다. 우선 平野가 많으면 中央執權의 성향이 있고, 山岳이 많으면 地方分權의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山岳은 국민의 성질에 큰 영향을 주어서 산악이 높고 험하면 자유의 정신이 강건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모험심이 많은데, 로마의 경우 양자의 지형을 모두 갖추어 국민의 성격이 양자를 겸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¹⁶⁾ 水利의 분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물가에 자리잡은 人民은 依食住의 방도를 쉽게 해결하고 교통도 편리하여 能力, 思想의 발달이 매우 빨라 國家의 구성도 빠르기 때문에 고대에 고도로 발달한 국가를 건설한 곳은 대개 큰 강의 하구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였다.¹⁷⁾ 海岸

14) 『西遊見聞』, 全書1, pp.83-87.

15) 『政治學』, 全書4, pp.397-401.

16) 『政治學』, 全書4, pp.402-405.

17) 『政治學』, 全書4, pp.406-407.

線에 대해서는 국토 면적에 비해 해안선이 길면 해양교통의 발달이 빠르고 이것은 또 문명 진보의 속도와 비례한다고 하였다.¹⁸⁾

地質은 천연자원을 의미하는데, 兪吉濬은 저술이 행해진 19세기 말을 공업이 중요성을 갖는 시기라고 보았기 때문에 國力은 공업의 원료인 철과 석탄의 보유와 관계가 깊다고 보고 각국의 자원을 표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토가 지나치게 비옥하면 국가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민이 근면하게 일하지 않으려 하므로 국가 발전에 有害하고, 지나치게 피폐하고 조악하면 열심히 일해도 생존에 급급하게 되어 국가 건설에 有害하다고 주장했다.

兪吉濬의 논의가 자연적 요소에서 사회적 요소로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西遊見聞』의 경우에는 經濟的 生産을, 『政治學』의 경우에는 국가의 요소 중 人民을 들 수 있다. 人民에 관한 논의는 社會와 國家의 항목에서 자세히 밝히기로 하고, 『西遊見聞』의 ‘世界의 物産’ 항목에 나타난 自然과 人間文明에 관한 兪吉濬의 논의를 좀더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의 물산’ 章에서 兪吉濬은 自然과 文明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양자를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自然은 주어진 것이고 人間の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인간의 문명은 노력 여하에 따라 보유할 수도 있고 보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天生한 物品은 此地에 宜한 者가 此地에 不宜하기도 하며, 彼地에 有한 者가 此地에 全無하기도 하나, … 人의 才藝와 工力이 不一하여 … 此는 天賦한 才藝와 工力을 由하여 然한 者 아니오 器械와 工夫의 差殊를 因함으로되 … 天生이 적어도 人才가 뛰어난면 … 人造物로 他邦의 天生物을 구하고, 天生物이 많아도 人才가 모자라면 天生物로 人作物을 구하나니 … 國家의 富強이 人民의 勤息에 在하고 物産의 豐粟에는 不由(하다.)¹⁹⁾

18) 『政治學』, 全書4, pp.408-410.

19) 『西遊見聞』, 全書1, pp.87-89.

俞吉濬은 國家의 富強은 天生, 즉 自然이 아니라 人民의 勤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함으로써 人間의 文明은 自然에 근거한 것이지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나아가 인간의 문명이 주어진 자연 조건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힘을 가함으로써 나왔으되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문명을 상정함으로써 自然에 대한 논의에서 사회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더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俞吉濬의 教育論이다. 그는 국가의 부강은 자연이 아니라 人民의 勤勉하고 怠慢한 것에 달렸다고 함으로써 국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俞吉濬은 교육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社會와 國家 전체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西遊見聞』의 상당 부분을 서구의 교육제도 및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을 언급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俞吉濬은 교육의 중요성과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란 ... 처음 낳았을 때는 아는 것이 없으니 그 지식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 나라 안에 불학 무식한 백성이 많으면 그 폐해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게 된다.²⁰⁾

... 국가의 근본은 교육하는 길에 달려 있는 것인데, 현재 이 세계에서 부강하기로 유명한 나라들은 모두 이 한가지 일에 힘써서 그 효과를 얻기에 이른 것(이다.)²¹⁾

... 교육의 효과는 ... 인간의 물정에 환히 통하게 되며 행실이 단정 ... 지각이 풍족 ... 타인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된다.)²²⁾

예부터 젊었을 때 큰 일을 꿈꾸는 사람은 가난한 집 자제들로, 그 부형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또 그 꿈을 이루기에 이르러서는 사회에 아주 편리한 큰

20) 서유견문(박영문고 92), p.110.

21) 서유견문(박영문고 92), p.243.

22) 서유견문(박영문고 92), p.250-251.

이익을 주어 왔던 것이니, 그러므로 나라 안의 이런 가난한 학생들을 돕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²³⁾

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학교가 세워져야 함을 역설하며 서양의 학교제도를 설명하였고 특히 빈한한 가정의 아이들 중 부모가 충분한 교육을 베풀어주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과 각종 도서 및 유희도구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⁴⁾ 그는 또한 정부가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교육에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태도가 이 가운데 있다'고 하였다.²⁵⁾ 이와 더불어 그는 아동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을 중시하여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²⁶⁾

제3절 : 社會와 國家

『西遊見聞』에서 俞吉濬은 자연환경, 사회적 관습, 학문, 종교, 정치제도 모두가 소개되어야 서구 전체가 소개된다고 본다. 『政治學』에 이르러 俞吉濬은 『西遊見聞』에서의 포괄적이고 다소 산만한 논의들을 政治問題로 압축시킨다.

『西遊見聞』과 『政治學』에서의 社會에 대한 논의는 家族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 및 정부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모든 논의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家族은 人生의 상호관계 중 가장 영구하고 가장 화목·친밀한, 사회의 기초로서, 생산과 소비의 단위가 되는데, 古代國家는 국가의 기본 요소가 개인이 아닌 家族이어서 法の 적용도 家族 단위로 이루어졌으나, 今代의 국가는 국가의 기본 요소가 個人이 되어 法の 적용도 개인 단위로 이루어

23) 서유견문 (박영문고 92), p.117.

24) 서유견문 (박영문고 92), p.250.

25) 서유견문 (박영문고 92), p.221.

26) 서유견문 (박영문고 93), p.50.

진다.²⁷⁾ 가족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共有가 가능한 공동체이지만 보다 넓은 범위의 조직인 사회의 경우 구성원은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 경쟁을 俞吉濬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 관계는 육체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괴롭지 않고, 물건을 소비하더라도 꺼리지 않는것 ... 사회인들과 교제를 갖게 되기에 이르러서는 이와 달라지게 된다. 각기 자신의 직분에 힘쓰며, ... 자신의 뜻한 바를 달성코자 앞을 다투게 되는데, 이것이 곧 사회적 경쟁이다. 인간 사회에 아름다운 이익 껍질이 바로 이 도를 따라 성취되고, 천하의 현실적인 상황이 이 도를 따라 보존되는 것이다.²⁸⁾

가족보다 확대된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속에 여러가지 풍습이 존재하게 된다. 俞吉濬은 혼례, 장례, 여성 대접하는 예모, 交友하는 도리, 오락하는 景像 등의 풍습도 서양 사회의 일부로서 중시하여 그가 보고 들은 바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의 관습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그는 '우리나라의 예법과 아주 달라서 허물할 만한 일이 많지만, 남의 나라 풍속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덮어두기로 한다'²⁹⁾ 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俞吉濬은 서양의 풍습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에 대해서도 '어떤 나라든지 각각 그 숭상하여 따르는 종교를 가지고 있음은 우리나라가 공자와 맹자의 도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³⁰⁾ 라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서양의 종교를 그리이스시대 부터 크리스티교의 발생, 전파, 공인,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서양의 종교에 대한 그의 언급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은 종교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포착이다.

27) 『政治學』, 全書4, p.431.

28) 서유견문 (박영문고 92), p.142.

29) 서유견문 (박영문고 93), p.124.

30) 서유견문 (박영문고 93), p.75.

신구 두 교종(기독교의 신구파)의 주의를 살펴보면 ... 천하 사람에게 도리어 해를 끼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 이 교리를 신봉하는지는 교황을 하늘처럼 의지하는 나머지 정부보다 더 두려워하며 자기 부모보다도 더 사모한다. 또 그 교리를 숭상하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토지와 민족을 그 종교의 형세에 따라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였다 ... 安南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였다.)³¹⁾

종교와 함께 兪吉濬은 교육과는 구분되는 서양의 학문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학문의 목적을 찾고 있으며,

사람이 학업을 닦지 않으면 ... 사람다운 직업과 책임을 다할 수 없다 ... 한 나라의 부강이나 빈약도 그 나라 국민들의 학업의 다소에 달려 있는 것(이다)³²⁾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성이라고 주장한다.

학문이 실상이 없고 허명 뿐이면 어디에다 쓸 것인가 ... 국가에서 가장 큰 근본으로 여기는 것은 실용에 있고 ... 국민들이 가장 큰 실용으로 여기는 것은 공부하는 버릇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³³⁾

한편 그는 학업하는 태도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제는 나날이 달라지고 다달이 새로와져서 갈수록 다양해가고 ... 남다른 재주를 가진 사람으로도 그 변화를 쫓다 측정할 수 없다 ... 많은 학문 중에서 한 분야를 전공하여 중도에 그만두거나 뜻없이 끝내버려서는 안된다 ... 인간 사회를 돌아 볼 때 많은 사람이 교제하는 도리는 그 부족한 점을 서로 이바지 하고 편리를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여러 학문을 연구한 학사들은 각

31) 서유견문 (박영문고 93), pp.83-84.

32) 서유견문 (박영문고 93), p.84.

33) 서유견문 (박영문고 93), p.95.

기 자기의 능력 있는 분야에서 현실세계를 유지해가는 것이다.³⁴⁾

이와 같은 생각에 기반하여 그는 학업을 (1)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詩文의 공부만 즐겨 利用厚生하는 방책이 없는 허명의 학업과 (2)사물의 이치를 밝혀내고 온갖 사물을 실용할 수 있도록 전력하는 실상있는 학업으로 나누고 서양학문의 성격을 실상있는 학문으로 규정하였다.³⁵⁾ 그리고 나서 그는 학문의 분야를 농학, 의학, 산학(수학), 정치학, 법률학, 물리학, 화학, 철학, 광물학, 식물학, 동물학, 천문학, 지리학, 人身學, 고고학, 언어학, 兵學, 기계학, 종교학으로 나누고 각각의 학문에 대해 설명하였다.³⁶⁾

俞吉濬은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가 복지 시설로 든 것은 貧澆(老人澆, 幼兒澆, 孤兒澆, 棄兒澆), 병원, 癡兒澆, 狂人澆, 盲人澆, 啞人澆, 教導澆등으로 그 제도와 역할, 운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는 이들 기관을 통해 일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훌륭하게 교육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가 세운 소수의 기관과 민간에서 설립한 다수의 기관이 있다고 하였다.³⁷⁾

俞吉濬은 화폐, 조세제도, 국가예산의 사용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관한 설명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는 화폐를 경제가치의 척도이며 교환의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34) 서유견문(박영문고 93), p.95.

35) 서유견문(박영문고 93), p.85.

서유견문(박영문고 93), p.69.

서양학술의 주된 경향은 만물의 원리를 연구하여 인류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 세제인류의 이용후생과 사회적 덕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36) 서유견문(박영문고 93), pp.85-94.

예를 들자면 政治學은 '정사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학업 ... 정부의 일체 제도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 ...'고 했고, 철학(窮理學)은 '지혜를 사랑하며 이치를 통함 ... 사람의 언행과 윤리, 온갖 행위의 근거를 논하고 규정함'이라 규정하고 있다.

37) 서유견문(박영문고 93), pp.175-187.

각국의 화폐제도 및 화폐주조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화폐는 정부의 신용과 관계 깊다고 주장하였다.³⁸⁾

화폐는 한 나라의 주권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물건 ... 화폐는 ... 균일해야함 ... 균일한 다음에는 깨끗(해야함).³⁹⁾

그는 이와 더불어 課稅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세금에 대한 兪吉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과세가 무거워지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정부가 삼가고 조심하여야 할 일은 국민들이 함께 낸 공금을 터럭만큼이라도 사사롭게 써서는 안되고 ... (옛 왕들이 세금을 감해주었다고 칭찬하는 것은 사실 타당하지 못한 면이 많다.) ... 만약 국민의 세금을 감면하여주는 대신에 나라의 공공하고 근본된 사업을 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를 훌륭한 정치라 할것인가 ... 큰 경영과 공공 사업으로 그 혜택을 천하에 균등하게 나누어 지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⁴⁰⁾

이렇듯 그는 정당하게 사용되는 세금은 충분히 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세금을 걷고 사용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엄격하다.⁴¹⁾ 세금을 충분히 견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국민의 납세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세금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국민은 당장 눈 앞에 보이지 않아도 정부가 없으면 모든 생활이 이루어 지지 않으니, 마땅히 세금을 내야

38) 서유견문 (박영문고 92), p.265.

39) 서유견문 (박영문고 92), p.269.

40) 서유견문 (박영문고 92), pp.206-207.

41) 서유견문 (박영문고 92), p.198.

과세의 원칙 ... 생활필수품에는 세금이 없게 ... 일정한 소득까지는 세금 면제 ... 사치품은 세금을 무겁게 ... (한다)

한다. ... 정부가 나라일을 행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납세를 독려하는 것은 국민의 일을 대신 하여 이루려는 것 ... 국민된 자는 먼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정부의 관대함을 바라는 것이 옳으며 ... 세금이란 정부의 당장 필요하거나 또는 지난날에 시행한 일에 대한 보상의 돈이다.⁴²⁾

그리고, 정부는 세금을 정부의 유지, 국민의 교육, 국토의 건설, 종교를 돕고 지탱하는 일, 빈민구제, 국가방어, 외교 등에 사용해야 함을 각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⁴³⁾

俞吉濬은 『西遊見聞』에서 서양 각국의 수도 및 상공업 중심지인 대도시를 약 30개 택하여 도시의 이름, 유래, 지형적 특성, 인구, 도시로서의 주요 기능, 산업, 주요 건물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정치가 개입되는 부분 즉 도시계획문제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는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도시는 ... 일정한 규모로 조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분란이 생길 것이며 ... 군색함이 많을 것 ... 중앙 정부는 단지 그 출괄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 공적으로 받는 이익을 보호하며 ... 도시의 제반 규칙은 각 지방의 주민들에게 맡겨 스스로 편한 방도를 행하도록 한다.⁴⁴⁾

서양의 도시는 (1)도로를 확보하고 잘 포장한다. (2)가옥의 번지수를 정하고 문패를 부착한다. (3)가로수를 많이 심고 가로등을 많이 설치한다. (4)공원을 설치하고 상록수와 화초를 가꾼다. (5)깨끗이 청소한다. (6)공공의 편리를 위해 시장, 점포, 우체국, 전신국, 변호사, 의사는 도시 중앙에 위치하고 은행, 소방서, 경찰서는 요충지대를 차지한다는 등의 계획 아래 잘 가꾸어진 도시라고 칭찬하고 있다.⁴⁵⁾

42) 서유견문 (박영문고 92), pp.208-215.

43) 서유견문 (박영문고 93), pp.217-220.

44) 서유견문 (박영문고 93), pp.225-226.

45) 서유견문 (박영문고 93), pp.226-227.

이상과 같이 兪吉濬의 모든 논의는 사회전체의 공공이익 혹은 국가의 이익으로 집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길준의 사상의 특징 중의 하나는 사회와 국가의 분리다. 사회에 대한 그의 정의와 국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兪吉濬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兪吉濬은 『西遊見聞』에서는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만 전개하고 있는 반면 『政治學』에서는 國家의 要素로서의 社會에 대해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어 언급하고 있다. 兪吉濬은 文物이 發達함에 따라 人民 中에 차이가 생기고, 인민이 그 利害를 달리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계급이 분화되며, 이를 법으로 인정하게 된다고 보았다.⁴⁶⁾ 즉,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는 平等한 상태에서 不平等한 상태로 되고, 階級構造인 社會組織이 생성된다고 하였다. 人民의 心力을 협동할 필요에 의해 血統, 容貌, 思想, 言語 등에 관한 同質性을 가진 사람을 族民(民族)으로 묶게 되었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職業이 복잡해지고 종류가 많아지면서 職業의 種類에 따라 團體를 결성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⁴⁷⁾ 兪吉濬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의 복잡성에 의해 사회조직의 제2급인 地方團體가 생성된다.

兪吉濬은 『政治學』에서 社會組織과 國家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西遊見聞』에는 國家의 權利, 政府의 起源, 政府의 種類, 政府의 職分, 등으로 國家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政治學』에서는 國家에 대한 이론적 설명 부분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兪吉濬에 의하면 國家는 ‘一族의 人民이 一方의 山川을 劃據하여 政府를 建設하고 他邦의 管割을 不受하는 者’⁴⁸⁾로서 다른 각도에서 정의 하자면 한 국가가 그 국민들에게 대하여 명령하는 권리이다.⁴⁹⁾ 兪吉濬은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1)多數의 人民 (2)一定한 疆土 (3)獨立主權 (4)政治組織 (5)共同目的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⁵⁰⁾ 그는 國家가 고

46) 『政治學』, 全書4, p.442.

47) 『政治學』, 全書4, p.442.

48) 『西遊見聞』, 全書1, p.105.

49) 『政治學』, 全書4, p.673.

50) 『政治學』, 全書4, pp.750-758.

정불변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국가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존재라고 인식하였다.⁵¹⁾ 이러한 國家는 다음과 같은 權利를 가진다.

… 邦國에 歸屬하는 權利는 國의 國되는 道理를 爲하여 … 緊切한 實要니 …
 〈第一〉 現存과 自保하는 權利 … 〈第二〉 獨立하는 權利 … 〈第三〉 産業의 權利 …
 〈第四〉 立法하는 權利 … 〈第五〉 交涉과 派使와 通商의 權利 … 〈第六〉 講和와 決約하는 權利 … 〈第七〉 中立하는 權利⁵²⁾

이러한 정의에 따라 俞吉濬에 이르러 國家가 社會나 王朝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정의위에서 俞吉濬은 社會와 國家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社會와 國家는 독립된 개념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俞吉濬의 언급을 통해 그가 두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고 나아가 國家의 개념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우선 國家는 사회에서 성장한 것이다.

國家는 社會에서 生長한 無形의 綜合體 … 社會上에 建設되어 獨立된 生活을 지닌것 … 國家는 家族, 地方團體, 族民 등과 가장 親密한 關係 …⁵³⁾

國家와 地方團體의 관계는, 地方團體에는 國家와 동일한 성질이 있으며, 단체의 권력은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나, 국가의 권력은 고유한 것이라는

51) 『政治學』, 全書4, p.673.

… 國家의 絶對目的이라 爲하는 者를 否認하니 … 國家의 目的은 萬世 不變하는 者 아니며 … 國家의 範圍도 萬世 不變하는 者 아니오 時勢의 轉換에 依하며 事의 差異에 依하여 不斷 變遷하는 者 … 應用政治學에 在하여서는 前述한 같은 定式 目的은 不論함으로 統計를 삼음 …

52) 『西遊見聞』, 全書1, p.106.

53) 『政治學』, 全書4, p.428.

점이 다르며, 近代國家는 지방단체를 통해 국가의 명령을 전하고 지방행정, 예술, 조세 징수, 징병, 교육 등의 제반 사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였다.⁵⁴⁾ 따라서, 地方團體의 獨立性(地方分權)과 國家의 行政權(中央執權)의 균형 여하는 西歐 政治學 上의 一大問題라고 兪吉濬은 설명하였다.⁵⁵⁾ 또한 國家와 社會를 구분하고 있음으로 인해 兪吉濬은 族民과 國民을 구분하고 있다.⁵⁶⁾

兪吉濬이 社會와 國家의 관계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되 상호 독립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난다.

… 國家는 … 族民의 社會組織과 最親密한 關係를 有하여 혹은 自己의 目的을 爲하여 是※의 組織을 使用하기도 하며 혹은 是※의 組織을 爲하여 自己가 其 使用되기도 하나니 古代의 政治學은 國家와 社會의 ※※親密한 關係를 不※함은 ※※※※한 ※을 먼저 면치 못함이라. 史家의 諸說에 宜하건대 혹은 是※의 社會組織을 압도하여 自己目的을 ※하는 機關으로 用한 ※도 有하며 혹은 國家가 的 社會組織에 壓倒한 바가 되어 其 ※※에 ※한 事도 有한 故로 吾人은 其國內에 存立하는 社會組織을 不知하고 其國의 代※制度를 理解하기 不能한지라.⁵⁷⁾

國家는 ※※ 社會組織의 存在함을 勿亡함이니 ※則 그 人民은 國家에 因하여 生存할 뿐 아니오 ※且 社會에 因하여 生存함일지며 又 人民이 自己의 職業에 ※할 뿐 아니오 亦 各種 社會에 속한 故로 國家와 其 利益을 相異케 하는 各種 社會의 利益을 有함일지니라.⁵⁸⁾

이와 같이 兪吉濬의 人間과 社會, 國家에 관한 논의는 모두 국가로 응축

54) 『政治學』, 全書4, p.437.

55) 『政治學』, 全書4, p.437.

56) 『政治學』, 全書4, pp.475-476.

57) 『政治學』, 全書4, p.428.

58) 『政治學』, 全書4, p.430.

된다.

관직을 받드는 것이나 학문에 힘쓰는 것이나 모두가 자연히 이 나라를 위하는 한 가지 일에 벗어남이 없을 것이지만, 농업에 힘쓰는 것도 나라를 위함이며 상업을 경영하는 것이나 물품을 제조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한가지이다.⁵⁹⁾

이러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바탕으로 俞吉濬의 군주론에 대한 논의로 들어간다.

제3장 君主論에 관한 이론적 고찰

앞서의 모든 논의가 國家로 모아지듯이 國家에 대한 俞吉濬의 논의는 君主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의 君主論을 (1)군주의 역할, (2)군주의 지위 (3)理想的인 政治體制와 君主라는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제1절 : 君主의 역할

俞吉濬은 君主와 政府, 主權을 분명한 개념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군주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논의된다. 國家와 관련되어 政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에서 君主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政體는 主權執行하는 形式을 云하는 *니, 國家가 其主權을 執行하는 作用은 必一定한 形式에 依하는 者라. 獨裁君主國은 ... 其主權을 ... 君主의 意志에 依하고 入憲君主國은 其主權을 ... 其憲法 條項에 依하나니 ... 國家가 其主權을 作用하는 機關을 謂하여 曰 政府며 國家가 其主權을 作用하는 形式을 謂하여 曰 政體라 ...¹⁾

59) 서유견문 (박영문고 93), p.41.

1) 『政治學』 제2편 제1장 國體와 政體, 全書4, p.486.

政府라는 기관을 통해 행사되는 국가의 주권집행 형식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양쪽 모두에서 君主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헌법조항에 의해 집행되는 형식을 군주의 의지에 의해 집행되는 형식과 동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兪吉濬의 君主論과 관련하여 볼 때 君主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권한의 절대성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군주와 국가 및 정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兪吉濬은 국가가 특정한 목표를 위해 건설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 역시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적절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 및 범위를 규정한다.²⁾ 따라서, 그는 정부의 역할 범위를 ‘理論에 ※由하야 可決할 者 아니오 其國※體의 ※歷及 現※의 制度凡俗※ 其他 百※態에 因하야 定함이 可하다’³⁾는 정도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정부를 건설하는 목표는 법률로서 인민의 권리를 수호하여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⁴⁾

人의 道理를 敎誨하며 法律로써 人의 權利를 守護하여 人生의 正理로 其身命과 財産을 保全하여 此事로 國家의 大業을 作하고 政府의 제도를 建하니 ...⁵⁾

2) 『西遊見聞』, 全書4, p.162.

‘政府의 事務를 大小를 無論하고 時를 隨하여 變易하는 者’

3) 『政治學』, 제2편 제2장 國權의 範圍, 全書4, p.685.

4) 儒家思想의 기초를 이루었다 할 수 있는 孟子는 『孟子』 梁惠王章句下에서 “왕이 정치하는 도리는 ... 문왕이 岐 땅을 다스림에 농사짓는 사람으로부터는 1/9을 취하고 벼슬하는 사람에게는 대대로 녹봉을 주며 관문과 시장을 살피되 세금을 걷지 아니하며 못에서 고기잡음을 금하지 아니하며 죄인은 그 형벌이 처자에게까지 미치지 아니하게 하였다.” 고 했으며 鄭道傳은 『朝鮮經國典』에서 “옛 성인이 법을 세운 것은 ... 무리들 사이에 다투고 힘이 비등하면 싸움을 하여 상잔에 이르게 되니 못 사람의 위 되는 법으로 다스려서 다투고 싸우는 자들이 화평해진 뒤에야 백성이 편안하게 된다.” 고 했다. 한편 T.Hobbes는 Leviathan에서 “정치 공동체의 목적은 안전”이라 했고 J. Locke는 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서 “인간이 ... 정치공동체 안에 단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재산보호”라 했으며 J.J.Rousseau는 사회계약론에서 “정부란 ... 인민과 주권자와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 설치되어 법률의 집행과 민사상의 자유 및 정치상의 자유의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중개단체”라 정의했다.

5) 『西遊見聞』, 全書1, p.157.

俞吉濬은 主權에 대한 분명한 定意없이 主權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政府를 國家의 主權執行機關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주 역시 國家 그 자체가 아니라 주권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⁶⁾

政府의 役割에 대한 규정은 君主의 役割에 대한 규정이 도출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君主는 國家의 主權을 집행하는 政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政府의 役割에 대한 규정에서 俞吉濬의 君主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을 대내적으로는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국권을 수호하는 것으로 보았다.

… 國家의 政府를 設眞하는 本意는 人民을 爲함이오 人君의 政府를 命令하는 大旨도 人民을 爲함이라. 人民이 政府를 敬奉하는 事와 仰望하는 願은 其 德化와 恩澤의 公平함을 一體均被하기를 欲함인데 則…⁷⁾

政府는 人民을 爲해야 立한 者라 人君의 命令을 奉하여 國家의 事務를 行하니…⁸⁾

… 國家의 權利는 … 苛虐한 特遇를 受하여도 不損하며 … 固守하여 勿失함과 克愼하여 目守함이 國人의 公同한 道理이며 政府의 最大한 職責이라⁹⁾

후술하는 章에서 상세히 밝히겠지만 俞吉濬은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권을 수호하는 정부의 역할을 근대국가의 특성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앞서 규정한 정부의 역할(군주의 역할)은 俞吉濬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 개혁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6) 『政治學』, 全書4, pp.552-553.

‘近世 專制君主制의 國家의 目的하는 바는 君主一人의 安寧福祉에 不在하고 國家全體의 安寧福祉에 在하는지라 … 君主가 … 法律及正義의 源泉되나 … 定한 憲章에 … 違反치 못하는義務를 有하니 … 君主는 國家 아니며 唯 國家의 元首라’

7) 『西遊見聞』, 全書1, p.161.

8) 『西遊見聞』, 全書1, p.225.

9) 『西遊見聞』, 全書1, p.111.

俞吉濬의 정의에 의하면 法治는 근대 국가의 또하나의 특징이다. 俞吉濬의 법률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도 君主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을 고찰할 수 있다. 우선 法에 대해 俞吉濬은 ‘主權의 本體 및 作用을 規定하는 全體’¹⁰⁾라 정의하고 법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法律은 … 邦國이 是가 無하면 亂하고 人類가 是가 無하면 悖하는지라 … 各其相稱한 法이 有하여 人民의 相與하는 權利를 保守함으로되 … 法律의 本意를 推究하건데 正道한 道를 勸하며 冤抑한 事를 平하기에 在하니 …¹¹⁾

人民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바른 道를 시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法律을 제정하고 지휘하는 존재에 관한 다음과 같은 논의 중에서 君主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찾을 수 있다.

夫法律은 大衆의 秩序를 維持하는 大具 … 匹夫의 能力으로 不能한 者오 … 必 公衆의 同尊하는 者하야 可한 故로 法律의 權은 王者에게 在하되 王者이 是權을 有함도 人民의 自守하기 不能한 大權을 合執하여 保護하는 道와 尊齊하는 政을 行함이니 王者一人이 能히 其政과 其道를 獨行하기 不能한 則 政府를 命하여 法律을 定하고 官吏를 命하여 是를 掌하니¹²⁾

정부 혹은 군주의 역할은 국가 전체의 질서를 규정하고 실천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政府和 民主主義에서의 政府의 역할은 ‘인민을 위한’ 정부라는 면에서는 공통되지만 인민을 위하는 주체가 天의 正道를 실현하는 의미에서 인민을 위하는 것이다. 반면 인민을 위하는 것은 人民의 主體가 되어 자신들의 權利를 보호 받을 수 있는 政府라는 의식에서 인민을 위한 정부인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는 어리석은

10) 『政治學』, 全書4, p.488.

11) 『西遊見聞』, 全書4, p.284.

12) 『西遊見聞』, 全書4, p.283.

백성에게 하늘의 바른 뜻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정부¹³⁾이기 보다는 人民의 權利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의 人民을 爲한 政府에 가깝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정부가 인민을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는 해도 인민에 '의해' 세워졌다고 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兪吉濬의 思想이 急進的인 것이 되지 못하는 한계이다.

제2절 : 君主의 地位

군주의 역할규정에 근거하여 군주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결정된다. 兪吉濬은 정치 및 국가의 체제를 군주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君主의 地位規定은 兪吉濬의 정치개혁의 방향을 보여준다.

君主의 地位를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主權이라는 개념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실상 國家, 政府, 君主, 主權의 네 개념은 모두 不可分의 관계를 맺고 있다.) 君主의 地位는 對外的인 地位가 있고 對內的인 지위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여러 국가의 君主들 사이의 지위 설정문제이고 후자의 경우는 군주와 인민 사이의 관계 규정 문제이다.

兪吉濬은 대외적으로는 韓國의 君主의 地位를 王에서 皇帝로 격상시킴으로서 세계 모든 국가의 군주를 동등한 지위에 둔다.

... 權利는 天然한 正理이며 形勢는 人爲한 剛力이라 ... 強大國이 ... 強小國의 適當한 正理를 侵奪함은 不義한 義舉며 ...¹⁴⁾

夫強國의 君도 君이오 弱國의 君도 君이라 一國의 上에 立하여 尊하며 最大한 權을 執하여 政治의 施發과 典章의 制制는 彼此의 殊異가 無하거늘 ...¹⁵⁾

13) 한 예로서 정도전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임금은 天工을 대신하여 天民을 다스리게 되니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정도전 三峯集, 『朝鮮經國典』, p.119.)

14) 『西遊見聞』, 全書1, p.111.

15) 『西遊見聞』, 全書1, p.117.

국내에서의 군주의 지위에 대한 논의는 몇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主權과의 관련 속에서 군주의 지위를 규정할 수 있겠고, 人民의 權利와 君主의 지위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法律의 문제도 함께 논의된다.

朝鮮의 전통적인 君主觀에는 물론 主權 개념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¹⁶⁾ 그러나 근대 정치학에서 君主를論하는 과정에서는 主權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主權概念부터 분명히 하고 君主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기로 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俞吉濬은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國家, 政府 등을 설명하면서 主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⁷⁾

한편, 主權이란 國家와 연관된 개념으로 서구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따라서 俞吉濬이 분명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대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다. 君主에 대한 규정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主權을 정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主權(sovereignty)의 辭典의 定義를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본다. 主權은 ‘한 국가의 최고, 그리고 항구적인 권력’이며 ‘신과 자연법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권력의 최고성, 유일성, 절대성을 강조하는 뜻으로 사용되며 대외적으

16) 朝鮮의 기초를 닦은 鄭道傳은 君主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임금은 天工을 대신하여 天民을 다스리게 되니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에 … 선비를 널리 구하여 같이 하게(된다.)”(朝鮮經國典) “임금의 지위는 높은 것이며 귀한 것이다. 그러나, 천하는 지극히 넓고 백성은 지극히 많으니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크게 염려스러운 일이다.”(朝鮮經國典)

17) 『政治學』, 全書4, p.486.

正體는 主權 執行하는 形式을 云하나니 … 國家가 其主權을 作用하는 기관을 하여 日 政府며 國家가 其主權을 作用하는 形式을 謂하여 日 正體라.

『政治學』, 全書4, p.485.

國體는 國家의 形式을 領하는 … 其主權의 主體及 客體의 ※在에 因하여 其形式을 ※계하는 者라 … 主權의 主體가 君主一人에게 在하고 그 客體는 國民全體 … 君主國體 … 主權의 主體가 國民總意에 在하고 其客體는 國民各個人로 成立하는 者는 民主國體라 領하나니.

『西遊見聞』, 全書1, p.113.

一國의 權利는 … 千萬人의 共守하는 主權이 一人의 私斷으로 執定하기 不能함은 理勢의 明正인 則 … 防國의 權利는 威逼과 私斷으로 變動하기 不能한 者라.

로는 국가의 자주성, 독립성을 의미한다.¹⁸⁾ 주권이라는 개념은 모든 정부 조직에는 최종결정권을 가진 한 인물이나 집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¹⁹⁾ 俞吉濬이 특수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主權을 국가 권력의 최고성, 유일성, 절대성의 의미로 이해하기로 한다.

君主의 對內的 지위로 볼 때, 俞吉濬은 民主主義政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君主國體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있다. 그는 근대정치체제의 특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主權은 군주에게 있지 않고 國家에 있으며 신민의 권리는 법률상 동등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何人이라든지 君主의 上에 立하기는 不能하다 함은 亦 眞理에 適合한 것이다'라 하고 있다.²⁰⁾

이와 더불어 그는 '其國의 最上位를 占한 者는 其君主며 最大權을 執한 者도 其君主라'²¹⁾ 하여 군주의 지위가 가장 상위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군주에 忠誠하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라 하고 있다.

人이 或日하대 先王의 制度는 一毫라도 變更함이 不可하다하니 ... 此는 其一을 知하고 其二에 未通한 者라 ... 其不變한 者는 人君이 人民의 上에 立하여 政府를 設置하는 制度와 又其泰平을 圖成하는 大權이며 人民은 人君을 爲하여 其忠誠을 盡하고 又其政府의 命命을 服從하는 事니 ... 人力의 變動하기 不可한 者라²²⁾

18) 정치학대사전

19)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p.77.

The concept of "sovereignty" implies a theory of politics which claims that in every system of government there must be some absolute power of final decision exercised by some person or body of recognized both as competent to decide and as able to enforce the decision. This person or body is called the sovereign. ... The theory of sovereignty purports to state an essential condition for political order. ... Sovereignty sees the world in the light of survival alone ... The ... sovereignty are best understood ... as an expression of search for a purely secular basis for authority amid the new state organization in Europe of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20) 『政治學』, 全書4, p.554.

21) 『西遊見聞』, 全書1, p.105.

22) 『서유견문』, 全書1, p.161.

이와 같이 兪吉濬은 主權 개념에 의거하여 국내 정치에서의 君主의 地位를 絶對적으로 尊重받아 마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兪吉濬은 그의 意思와는 관계없이 당시의 상황이 제공하는 한계 때문에 君主存立의 절대성을 주장했을 수도 있다. 君主制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피지배층에게도 이단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兪吉濬은 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甲午更張에서 對內的으로 사실상 君主의 役割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갔다. 따라서, 主權의 主體라는 점에서 범접할 수 없이 높은 것이고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는 군주의 지위는 다분히 상징적인 것일 수 있다.²³⁾

人民의 權利와의 관계에서 君主의 地位를 규정한 논의는 人民의 權利에 대한 개념 규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兪吉濬은 西洋을 소개하면서 人民의 權利라는 개념, 즉 萬民이 權利를 지닌다는 점에서 平等하다는 개념을 도입했다. 君主의 문제를 다루면서 人民의 문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려는 것은 인민의 權利라는 개념이 등장함으로써 그 이전의 君主論이 새로운 군주론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인민과 군주 사이에 새로운 關係를 설정해야 하며 그 결과 새로운 政治體制를 구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兪吉濬은 人民의 權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人民의 權利는 其自由와 通義를 謂함이라 … 人의 人되는 里는 天子로부터 匹夫에 達하여 毫釐의 差가 本無한 故로 … 人上人도 無하고 人下人도 無하니 天子도 人이요 匹夫도 亦人이로되 天子라 謂함과 匹夫라 謂함이 人世의 法律大綱으로 地位의 區別을 立함인 則²⁴⁾

23) 1894년 12월 12일에 (冬至) 高宗과 王世子는 宗廟에 屐謁하고 개혁의 내용을 설했다. 이 글은 兪吉濬이 지은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①朝鮮이 自主獨立國임을 확인. ②정치에 왕비 비빈 기타 왕실의 다른 사람들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③왕실의 사무와 국가 사무를 나눈다. ④의정부와 각 아문 관리의 직분 한계를 명확히 한다. ⑤세금 등 경비를 사용하는 모든 일은 탁지부에서 총괄한다.

24) 『西遊見聞』, 全書1, p.128-133.

臣民의 權利自由라 함이 國權※面의 制限에 不過함이라 ※ 北米合衆國의 憲法에는 이를 ※하야 私權利에 全屬하고 法國의 憲法에는 油象的 意義를 更加하야 人權이라 謂하니라²⁵⁾

이러한 정의에 따라 俞吉濬은 人民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西遊見聞』과 『政治學』에 있는 조항이 조금 다르다. 『政治學』에서 사용하는 조항들이 현대 정치학에서의 용어에 더욱 근접하고 있다. 이들 人民의 權利에 대한 조항에는 政治에 參與할 權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²⁶⁾ 일반적으로 소극적인 권리로 분류하는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俞吉濬은 급진적인 혁명가가 아니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다. 俞吉濬은 人民의 權利 역시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가 人民의 권리에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도 군주의 지위가 人民의 권리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된다. 군주의 지위에 대한 일견 모순된 듯한 규정은 法을 매개로 한 테두리 안에 공존할 수 있게 된다. 人民의 權利도 法으로 보호되고 君主의 地位도 法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 君主는 國家아니며 唯國家의 元首라 法律이 最高權力을 有한 … 臣民의 權力은 法律上 同等되는 (것이다.)²⁷⁾

俞吉濬은 近世國家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法治를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25) 『政治學』, 全書4, p.695.

26) 『西遊見聞』, 全書1, p.136.

〈自由의 通義의 條目〉 1.身命의 自由及 通義 2.財産의 自由及 通義 3.營業의 自由及 通義 4.集會의 自由及 通義 5.宗教의 自由及 通義 6.言詞의 自由 7.各譽의 通義(명예훼손죄 적용)

『政治學』, 全書4, pp.695-6.

〈臣民의 權利自由의 種類〉 1.信教及思想의 自由 2.言論의 自由及 移轉의 自由 6.公平한 保護를 受하는 權利 7.臣民私利의 授保(私生活 保護) 8.私有財産의 保全

27) 『政治學』, 全書4, p.55.

서는 그의 저서 여러 부분에서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즉, '人의 道理를 敎하며 法律로서 人의 權利를 守護하여 人生의 正理로 其身命과 財産을 保全하여 此事로 國家의 大業을 作하고 政府의 規度를 建'하는 것이며²⁸⁾ 憲法으로써 國家及 臣民의 權利義務를 規定하여서 國家及 臣民의 權力限界를 定하는 것인데, 臣民의 權利自由라云하난 思想은 英國의 權利法典에 在하다²⁹⁾ 하였다. 나아가 法律의 本質적인 뜻은 '人의 權利를 慎重하고 又因하여 是를 保護하는 것'이어서 法律의 設施가 없으면 權利도 능히 존재하기 어렵다(인간의 권리는 법률의 소산)고 하였다.³⁰⁾

이와같이 法을 最高의 지위에 둠으로써 인민의 권리와 군주의 권리는 공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군주의 役割을 논의할 때 君主가 政府에 명하여 法律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군주의 권한이 인민의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고찰에 의하면 人民의 權利와 君主의 權限은 모두 절대적인 것이면서 서로 보완하되 君主에 人民이 따라야 하는 관계로 규정된 듯하다.

지나친 비약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까지의 군주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兪吉濬의 논의를 검토해 볼 때 개혁과 군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군주는 개혁의 중심에 위치한다. 군주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격상되어야 하며 대내적으로 최고의 지위에 놓여야 한다. (2)그러나, 개혁의 방향은 군주와 인민의 권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3)따라서, 군주의 대내적 역할은 차차 축소되어 국권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실제적인 권한은 법률을 제정, 수행하는 실무관료들에게로 이전되어 간다. 君主의 지위에 관한 兪吉濬의 규정은 다음 절에서 그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분명해질 것이다.

28) 『西遊見聞』, 全書1, p.157.

29) 『政治學』, 全書4, p.694.

30) 『西遊見聞』, 全書1, p.139.

제3절 : 理想的인 政治體制와 君主

俞吉濬은 人民의 權利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政府와 君主制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人民이라는 矛盾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法的 支配로 하나로 묶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 시키는 정부가 俞吉濬이 理想으로 삼고 있는 정부다. 그는 여러가지 형태의 정부를 열거하여 설명하면서 각 체제를 평가했다. 그 과정에서 俞吉濬이 이상으로 삼고 있는 정치 체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모든 여건을 무시한채 한가지 이상적인 체제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각 국가마다 적절한 체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夫政府形式의 善惡은 歷史上 發達한 程度及 現在 成立한 事情에 因하는 者라 其 形式이 完美치 못하여도 其 程度及 要請에 的中한 者는 是 善良한 政體며 … 程度及 要請에 的中치 못한 즉 善良치 못한 政體니 … 政體의 善不善이라 云함은 特一한 國家에 對하여 關係한 用語에 불과한 즉 … 政治上 自由는 文明한 人民에게 必要되야도 未開한 人민에게는 必要되지 아니하며 入憲政體는 文明한 人民에게는 適當하야도 未開한 人民에게는 적당치 아니하며 … 共和制가 歐米의 文明諸國에는 能히 人民의 福祉를 保護하야도 南米半開한 諸國에 在하야난 其 暴戾함과 ※※함이 寡人制보다도 遺甚치 아니한가.³¹⁾

俞吉濬은 정부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 그의 理想政治體制를 논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는 國體를 논할 때 主權의 主體 및 客體의 관계로 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는 國體를 主權者의 數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主權者의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음을 아리스토텔레스와 몽테스키외의 분류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³²⁾ 물론 主權者

31) 『政治學』, 全書4, p.491.

32) 『政治學』, 全書4, pp.498-503.

가 곧 君主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君主를 중심으로 政府의 종류를 구분하는 보다 구체적인 俞吉濬의 논의가 있으니 이를 따름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는 政府種類를 君主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1. 君主의 擅斷하는정체

… 法律 政令의 一切 大權이 皆 君主一人의 手中에 在 … 治國하난 道에 最 不公한 者

2. 君主의 命令하는 政體 (壓制政體)

… 法律과 政令을 君主一人의 獨斷함을 由하되 臣下의 公論을 從하난 者
… 人君이 … 不意한 事를 欲行한 則 … 此 限界를 犯越함은 人民의 耳目을 顧忌하난 故로 … 擅斷하는 政體와 異同이 有 …

3. 貴族의 主張하는 政體

… 一定한 君主가 無 … 政事와 法令이 貴族의 合議하는 勢力에 在 … 生民의 塗炭이 各 政體중 最甚

4. 君民의 共治하는 政體 (立憲政體)

法律 及 政事의 一切大權을 君主一人의 獨斷함이 無하고 議政大臣이 必先配定하여 君主의 命令으로 施行하는 者 … 法外에는 一步도 出하기 不能하고 … 군주로부터 庶人에 至하여 … 少事라도 私情을 任行하지 아니하며 司法 諸大臣과 行政 諸大臣은 各 其職事를 君主의 奉命令으로 하고 政事와 法律마다 議政大臣의 配定한 者를 施行 … 實狀은 議政行政 及 司法의 三大綱에 分하니 君主는 三大綱의 元首더라.

5. 國人의 共和하난 政體 (合作政體)

… 君主의 代에 大統領이 其國의 最上位 … 凡百事爲가 階君民의 共治하난 政體와 同 … ³³⁾

이와 유사한 정치체제 분류는 『政治學』에서도 행해진다. 그는 『政治學』에서 국가의 역사적 발달을 서술하는데 상당부분을 할애하는데, 군주의 역할과 지위를 통해 체제를 구분하고 있다.³⁴⁾ 俞吉濬은 분류가 끝난 후 가장

33) 『西遊見聞』, 全書1, pp. 163-170.

34) 『政治學』, 全書4, pp.503-672.

바람직한 정치체제는 君民共政治體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그리고, 그 체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그가 추구하던 정치개혁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君民의 共治하는 者가 最美한 規模라 하니³⁵⁾

… 君民共治하는 政體는 … 公平하고 私情이 無하야 民의 好하난 者를 好하며 惡한 者를 惡하야 … 人마다 其議論에 參與 … 人民의 數를 定하야 … 薦擧하야 君主의 政治를 贊襄하며 人民의 權利를 保守하야³⁶⁾

그런데, 이 글들 중에서 유길준은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³⁷⁾ 당시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君主의 存在를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유길준이 일으키고 있는 혼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西遊見聞」보다 후에 쓰여진 「政治學」에서 俞吉濬은 그의 개혁의 방향이 入憲君主制임을 더욱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入憲君主制의 特質은 國民의 代表者로 代議機關을 成立하여 … 君主權力의 作用을 制限함에 在하니³⁸⁾

… 英吉利의 政府가 民을 保護하야 自主하는 權利를 獲遂하게 하는 緣由는 全國의 人心의 浸灌한 累世舊習을 因하여 其政令制度를 改定함이어든 …³⁹⁾

35) 「西遊見聞」, 全書1, p.171.

36) 「西遊見聞」, 全書1, p.168.

37) 「西遊見聞」, 全書1, p.171.

國人의 共和하는 政體는 世傳하는 君主만 無할 뿐 … 君民의 共治와 同(하다.) 「西遊見聞」, 全書1, p.159.

合衆國의 大統領을 選擇하는 法이 有하니 泰西學士 中에 其法을 取함이 可하다 하는 … 者가 有하나 此는 事勢에 未達하며 風俗에 甚昧하야 童稚의 戲談에도 不及 …

38) 「政治學」, 全書4, p.564.

39) 「西遊見聞」, 全書1, p.289.

이와 관련하여 유길준은 영국의 의회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40) 여기서 우리는 유길준의 개혁의 모델은 英國式 立憲君主制임을 알 수 있다.

俞吉濬은 法治의 확립을 통해 君主도 존속 시키고 人民의 권리도 보호 하려 했다. 그렇다면, 俞吉濬은 民主主義를 수용했다고 할 수 있는가? 俞吉濬의 사상이 金玉均등의 급진개화사상보다 온건하고 보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俞吉濬은 혁명이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해시키고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개혁하는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온건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목표로 한 것은 民主主義⁴¹⁾였고 이것은 중요한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제4장 結論 : 君主論의 실천적 의미

俞吉濬은 『西遊見聞』과 『政治學』에서 서양의 정치 사상과 정치제도를 소개하고 평가함으로써 朝鮮 개혁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그 방향은 영국식 立憲君主體制이다. 朝鮮의 개혁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그의 의견은 정치개혁에 관한 논문들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조선이 과거에는 빛나는 문화를 창조하는 ‘開化된’ 국가였으나 후배가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지 못하여 天下 萬國의 명예 我邦에 모이도록 하지 못했다고 개탄하고 있다.¹⁾ 한편, 당시의 朝鮮의 운명은 일본과 러시아에 달려있으며 두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만 조선이 안전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득불 朝鮮이 개혁해

40) 『政治學』, 全書4, pp.566-608.

41) 『政治學』, 全書4, p499.

그러나, 英國에서는 法理上 君主, 貴族이 特權이 있는 것이 아니고, 政治上, 社會上 各稱될, 따름... 法理上 모두 國民... 따라서 英國의 國體는 民主國體의 一種.

1) 『西遊見聞』, 全書1, p404.

야 하는데 기존의 정부 인사들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²⁾ 나아가 俞吉濬은 政治의 본질은 思想에서 나오고 사상은 시대의 필요에서 나오는 것인데, 孔子 시대에는 博愛를 주로하는 그의 사상이 시대의 필요였고 금일에 있어서는 기술이 모든 도덕적 규범까지 무시하는 정도로 핵심적인 것이 될 수는 없지만, 技術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되어 문명된 국가는 技術之治에 이르렀으니 朝鮮도 온 국민이 衷心 奮發하여 이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 이렇듯 俞吉濬은 조선이 서양의 새로운 기술문명을 수용하여 정치적 개혁까지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하였다.

俞吉濬은 科學를 통해 관직에 등용되지 않았다. 그의 관직 생활 기간이 길지도 않았다. 그가 관직에 있었다고 할 만한 기간은 1894년 6월 부터 1896년 2월 俄館播遷 때까지의 약 2년간이다. 이 2년은 근대화를 위한 엄청난 변혁을 시도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기간에 관직에 있었던 유길준은 조선의 정치개혁 시도에서 중요한 한 몫을 한 셈이다.

주목할 것은 유길준이 급진적인 개혁파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⁴⁾ 그는 民主主義라는 근대적 체제를 지향했지만 그의 민주주의의 수용은 君主制의 유지, 法治의 강화, 人民을 위한 정치, 국가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 단위로 생각하는 것 등 조선의 기존 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俞吉濬은 서양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선각자의 한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지닌 세계관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한, '과도기적 개혁관료'⁵⁾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保國之策”, 全書4, p.250.

3) “時代思想”, 全書4, pp.284-285.

4) 이광린, 한국개화사상연구, pp.87-92.

5) 유명익, 甲午更張研究, p.129.

그는 전통과 근대가 교차하는 시점에 태어나 활동한 전형적인 과도기적 개혁관료였다. 신분상으로 볼 때 그는 양반으로 태어났으나 과거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반반한 양반 관료로서 행세하지 못하고 토반, 중인, 서얼 등 아류 양반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직업적으로 볼 때, 그는 時務學을 전공했으나, 근대적 지식인이 될 수 있는 파격적인 생애를 추구하지 않고 전통적인 官路에 집착하여 두번

본 논문이 유길준의 군주론을 밝힘에 있어서 몇가지 한계가 있음을 시인한다. 그의 저서에 나타난 주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형식을 취했다 해도 兪吉濬의 논의 중 선택한 주제와 예상한 결론에 적합한 것만 차별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재할 수 없으며, 그의 많은 저서 중 2권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부로서 전체인양 확대 해석하는 잘못을 범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오류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兪吉濬의 정치활동을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개화기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유길준을 부각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개화기의 여러 정치단체 중 상해임시정부의 대통령제 채택 등의 역사적 사실과의 관계 속에서 유길준의 군주론을 조명한다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더 입체적으로 구성해내고 그 시대가 지니는 의미와 유길준의 사상이 지니는 의미를 더 선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길준의 군주론에 대한 논의는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할 주제라고 본다.

(1883, 1894)이나 外衙門主事職을 제수받았다. 정치적으로 볼 때 그는 한편으로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는 甲申開化黨과 어울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계의 보수파 내지 절친개화와 상관에게 꾸준히 봉사하였다. 한 마디로, 그는 동양문명과 서양문명, 그리고 전통과 근대 사이에 介在하여 양자를 조화시켜보려고 노력한 중용 지향의 인간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보수적 입장에서 개혁가였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만길,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 1984.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 1984.
고종-순종 실록, 탐구당.
 국사편찬위원회, 개화척사운동 v.14, v.16, v.18, v.19, 1973-1976.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탐구당, 1962-1972.
 금장태, 고광식, 韓國儒學 近百年, 박영사, 1986.
 김길환, 조선조 유학사상연구, 일지사, 1986.
 김도세, 서재필자서전, 을유문화사, 1972.
 김영작, 한말내서널리즘연구, 청계연구소, 1989.
 김옥균 外著, 이민수 外譯, 한국의 근대사상, 삼성출판사, 1990.
 김옥균, 金玉均全集, 아세아문화사, 1979.
독립신문
 박충석, 유근호, 朝鮮朝의 政治思想, 평화출판사, 1988.
 박충석, 韓國政治思想史, 삼영사, 1982.
 법제처 譯, 經國大典, 일지사, 1978.
 신용하, 한국근대사회사상사연구, 일지사, 1987.
 신용하, 한국근대사회사연구, 일지사, 1987.
 유길준, 兪吉濬書 1-5, 일조각, 1971.
 유길준, 서유견문, 박영문고.
 유길준, 허동현 譯, 유길준 논소설, 일조각, 1987.
 유동준, 유길준전, 일조각, 1990.
 유명익, 갑오경장연구, 일조각, 1990.
 윤치호, 윤치호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발행, 탐구당, 1973.
 이광린, 개화당연구, 일조각, 1973.
 이광린, 한국개화사상사연구, 일조각, 1979.
 이광린, 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1969.
 이광린, 한국사 강좌 : 근대편, 일조각, 1984.
 이광수, 李光洙全集, 삼중당, 1962.

- 임창영 著, 유기홍 譯, 서재필박사전기, 공병우글자판연구소, 1987.
- 정도전 著, 정지상 조준하 譯, 三峯集, 동화출판사.
- 정약용 著, 다산연구회 譯註, 역주 목민심서, 창작과 비평, 1979.
- 정약용 著, 민족문화추진위원회 譯, 국역 경세유표, 1985.
- 최익현 著, 민족문화추진위원회 譯, 면암집,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최창규, 韓國의 思想, 서문당, 1973.
- 최창규, 근대한국 정치사상사, 일조각, 1972.
- 황현 著, 매천야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 1), 탐구당, 1971.
- 홍사단출판부, 도산 안창호, 1947.
- 김영호, “유길준의 개화사,” 창작과 비평 (1968, 가을).
- 유영익, “갑오경장 이전의 유길준,” 한림대문집 4, 1986.
- 이광린, “일본 망명시절의 유길준,” 신동아, 1986.